

결식아동 도시락 공급업체 단기 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 과업지시서

1. 개요

- 가. 결식아동 도시락 공급업체 계약기간 만료(2016.02.29.)에 따라 공급업체 공개 입찰 선정시까지 기존 공급업체 행복도시락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공급을 수행하는 과업임.
- 나. 계약 업체 : 행복도시락
- 다. 계약 일자 : 2016.03.01~2016.03.31
- 라. 시설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퇴계로90길 56-8

2. 일반범위

가. 적용범위

본 과업지시서는 행복도시락에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도시락 공급을 수행한다.

단, 서류 상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(여성가족과)를 “발주기관” 이라 칭하고 본 배송업체인 행복도시락을 “계약상대자” 라고 칭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.

나. 관계 법규 등 적용

- 1) 도시락 배송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쌍방 합의 하에 이행토록 한다.
- 2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협약서에 준하여 이행토록 한다.
- 3) 또한 모든 용역의 부가세는 별도 발생한다.

다. 도시락 수행 방법

- “계약상대자” 는 도시락 배송을 추진함에 있어 “발주기관” 의 명단에 적합하게 배송하여야 함
- 1)토, 일요일에 해당되는 급식은 금요일에 배달하여야 하며, 법정 공휴일은 해당일 전일 배달 시에 배달한다.
 - 2)명절 등 연휴 시 배달일 포함 3일 이상의 급식이 배달될 경우 위생을 고려하여 장기보관이 가능한 급식을 제공한다.
 - 3) 지원되는 모든 급식은 당일에 조리하고, 당일에 배달한다.
 - 4) 아동의 요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아동의 가정으로 배달한다.

라. 도시락 업체 역할

- 1)“계약상대자”는 급식의 조리 및 배달 과정과 관련된 위생상의 문제로 인하여 결식아동에게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.
- 2)“계약상대자”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단가의 80% 이상을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한다..
- 3)“계약상대자”는 1인 1식 급식비는 사천원(4,000원)으로 하며, 아동 성장 발육에 필요한

양질의 메뉴 개발 및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급식비 지급단가의 20%이내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
- 4)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 만료 시 배송의 의무가 소멸되며, 동 기간동안 용역 물량 공급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을 청구 할 수 있다.

마. 의무

- 1)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제반 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) “계약상대자”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,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송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, 식중독 등 수혜자에 대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3) “계약상대자”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,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2. 기타사항

- 가. 용역 물량은 재조사 시 증감될 수 있으므로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가 협의하여 상호 정산할 수 있다. 끝.